



정보화사회와 윤리

- 성신여자대학교 김도형 @ IT학부 -



제9장 사이버 폭력

- 사이버 폭력의 이해
-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사이버 폭력의 이해 (1/9)

- 사이버 폭력의 정의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사이버 폭력의 이해 (2/9)

- 사이버 폭력의 유형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음란
 - 사이버 테러

사이버 폭력의 이해 (3/9)

- 사이버 폭력의 발생 원인
 - 인터넷 윤리 의식의 부재
 - 익명성
 - 비대면성
 - 시/공간적 무제약성
 - 빠른 정보의 집약 및 파급성
 - 비감독성
 - 전문성 및 기술성

사이버 폭력의 이해 (4/9)

- 인터넷 윤리 의식의 부재
 - 사이버 테러가 등장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와 연결
 - 네트워크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인식됨
 -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에 윤리적인 차원의 교육이 부족
 - 사용자 자신이 가져야 할 네트워크 상에서의 마인드가 부족
 - 네트워크의 사용 이전에 사용자의 윤리적인 교육이 필요
- 익명성
 - 사이버 상에서는 직접 상대를 대면하지 않아도 됨
 - 상대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도 정보의 교류가 가능
 - 정보를 주고 받는 시간이 비 실시간적임
 - 이런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실보다 쉽게 범죄가 이루어짐

사이버 폭력의 이해 (5/9)

- 비대면성
 - 사이버 상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도 됨
 - IP와 도메인을 이용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 대부분의 도메인은 사용자의 자세한 신용정보를 비노출
 -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은닉성을 가지기에 쉽게 범죄 성립
- 시/공간적 무제약성
 - 네트워크의 접속환경에 기인한 특징
 -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
 - 현실과 다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음
 - 이런 특징으로 인해 범죄 발생 시 정확한 파악이 힘들
 -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을 발생
 - 정확한 범죄 일시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테러의 원인

사이버 폭력의 이해 (6/9)

- 빠른 정보의 집약 및 파급성
 - 네트워크 상에는 갖가지 정보가 집약되어 존재
 -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부터 사회의 이슈까지 다양
 - 정보의 집약은 공유성을 띄고 있어 빠른 파급이 가능
 - 악성 루머나, 유해 정보도 퍼지는 것이 문제
 - 명예훼손 및 사이버 상의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짐. 개인의 의사를 네트워크 상에 유포하는 것이 범죄는 아님. 의사 표현과정에서의 특정인을 모독하는 행위
 - 물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의사나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

사이버 폭력의 이해 (7/9)

- 비감독성
 - 네트워크 환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 현재 네트워크의 운영은 관리 차원의 감독만 이루어질 뿐
 - 실질적인 감독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감독을 하고자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
 -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환경적인 차원에서 기인
 - 네트워크 상에서의 범죄를 쉽게 유도

사이버 폭력의 이해 (8/9)

- 전문성 및 기술성
 - 일부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사항
 - 네트워크의 전문적인 지식을 악용하여 질 나쁜 범죄를 행함
 - 대부분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들
 -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음
 - 흔히 해커(hacker)라 불림
 - 개인이나 조직으로 행동하는 단위의 범죄자로 구분
 - 범죄행동을 일부러 남기며 감시기관을 기만하기도 함

사이버 폭력의 이해 (9/9)

- 사이버 폭력의 특징
 - 피해 확산이 빠르다
 - 집단성
 -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
 -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
 -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
 - 일일이 규율·처벌하기 어렵다
 - 현실생활로 2차 피해 발생 가능하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19)

- 사이버 폭력의 피해 실태 - 사이버 폭력 피해 상담사례 비율

구분	계	피해 내용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2004년	3,913	2,285(979)	322	81	1,225
2005년	8,406	5,735(1,802)	889	193	1,589
2006년	7,050	4,751(1,641)	968	184	1,147
2007년	5,599	3,780(1,257)	392	186	1,241

사이버 폭력 피해 상담사례 비율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2/19)

-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음란
 - 사이버 테러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3/19)

- 사이버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 자신 혹은 타인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이나 사진 및 사진 합성물 등을 올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 채팅 사이트에서 대화 도중에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4/19)

- 사이버 명예훼손 - 사례 1

- 모 은행의 공개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주부 A씨
- 주부 A씨는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인 OO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하기 위해서 OO 은행에 들렀다. 이때, B 과장이 직원들을 호통치고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OO은행의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OO은행을 주 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주부 A입니다. 얼마 전에 은행에 예금을 출금하고자 은행에 들렀다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작은 키에 마르고 안경을 쓰고 있던 과장이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고객인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던데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직원들한테 상사 대접이나 받겠습니까? 이런 XX 같은 놈은 회사에서 매장시켜야 되고, 삼청교육대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5/19)

- 사이버 명예훼손 - 사례 2

- ○○이사주선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는 도중 직원의 실수로 냉장고가 파손되었는데 피해 보상은 물론 업체 사장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사업체의 대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사정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주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사업체를 찾다가 이사 서비스와 관련해 링크된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와 제휴를 맺은 업체라고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저희 집 이사를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 집 냉장고를 줄에 달아 내리다가 떨어뜨려 냉장고가 파손되었습니다. ○○는 책임인정은 하였지만, 피해보상도 전혀 해주지 않고 사과도 없이 모른 체 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악덕 ○○업체와 그 대표인 사기꾼 B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6/19)

- 사이버 모욕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언어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인 전자게시판, 대화방 또는 전자우편이나 쪽지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에 대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욕설을 도배하는 등의 언어폭력 등도 사이버 모욕으로 간주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7/19)

- 사이버 모욕 - 사례 1

- 욕설만 허용되는 게시판에서 심한 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직장인 '철수'는 심심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OO 사이트에서 개설해둔 '욕설만 허용되는 방'이라는 게시판을 알게 되었다. 이 게시판은 운영자 C가 회원들의 자유게시판 참여도를 높이고자 재미로 개설해 둔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OO 사이트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고, OO 사이트의 게시판 조회 수는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방 글을 게시판 사용자인 W가 게시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리 욕설이 허용되는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심한 모욕적인 발언에 욕설을 게시한 W를 찾아서 단죄하고 싶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OO 사이트의 욕설이 허용되는 게시판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비방성 글이 '철수' 개인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에는 글을 게시한 W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는 '철수'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게시판 사용자들이 비방성 글을 읽으면서 글을 대상자가 '철수'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자인 W는 철수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W는 적게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철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시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8/19)

- 사이버 모욕 - 사례 2

- 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호회의 회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저희 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클럽장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갖가지 욕설을 담은 쪽지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카페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저를 비롯한 카페회원 및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회원활동 중지조치를 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욕설을 담은 쪽지를 보내고 있고, 운영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방이 카페에 침입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카페의 회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 신청인은 먼저 '사이버모욕죄'로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추후에도 상대방이 욕설 등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함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대방의 홍보활동에 영리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 사실관계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여부에 따라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위반죄'로 의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9/19)

- 사이버 스토킹
 -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발생조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되어야 한다.
 -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0/19)

• 사이버 스토킹 - 사례 1

-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이용하는 게시판마다 악성 댓글이나 답글을 남기고 있다.
- A양은 전 남자친구인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헤어졌다. 그런데 이후 전 남자친구였던 B는 계속해서 A양의 홈페이지 방문록과 A양이 자주 이용하는 YY 사이트의 게시판에 A양이 게시한 글마다 '더러운 XX 같은 년, 내가 니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ㅎㅎ',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두고 보자' 등과 같은 댓글 혹은 답글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서 A양은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마음대로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YY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B 군의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홈페이지마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 이처럼 전 남자친구였던 B 군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사이버 스토킹-를 행함으로써 A 양은 실생활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것 못지않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위와 같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함으로써 그 수치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1/19)

• 사이버 스토킹 - 사례 2

-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합의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약혼한 남자한테 제 과거에 대한 내용을 5번이나 메일로 보내고, 제 약혼자의 미니홈피에까지 와서 이상한 글을 올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폐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결혼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헤어진 남자친구가 약혼한 남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이버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니홈피에 이상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동법 제61조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유폐하겠다는 언사는 형법상의 '협박죄'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불가능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죄가 인정된다면 더 큰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백히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스토킹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불처벌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것)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반의사불벌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2/19)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상호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행위로 인해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이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매체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 위협감 등의 정서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직접적인 사이버 성폭력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글, 문자, 음향, 영상을 반포하고 판매하며 임대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도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3/19)

- 사이버 성폭력 - 사례 1

- 화상 채팅 중 촬영된 동영상이 유출된 경우
- A양은 B군과 OO 채팅방에서 화상 채팅을 하면서 가상섹스(컴섹)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DD 음란 사이트에서 자신과 B군과의 가상섹스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음란 화상 채팅을 같이 한 B군이 A양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서 유출시킨 것이었다. 비록 동영상에 A양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A양은 혹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너무도 두려웠고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 이러한 사례는 A양이 B군과 음란 화상 채팅을 한 행위에 대해서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행위 자체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B군이 A양의 동의 없이 A양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시킴으로써 A양에게 성적 수치심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는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이로써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4/19)

• 사이버 성폭력 - 사례 2

- 자신의 사생활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 C군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을 열어 보던 중 자신과 닮은 사람의 몰래 카메라(몰카)인 듯한 동영상을 발견하였다. 몰래 카메라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본 C군은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모텔을 배경으로 자신과 여자친구 E양의 성행위 장면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몰래 카메라 동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이나 대화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영상을 발견하게 된 C군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유포되고 있는 모든 자신이 기록된 동영상을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더욱이 자신이나 여자친구인 E양을 아는 사람들이 유포된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보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C군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몰래 카메라 동영상물로 인해서 심한 성적 수치심 혹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몰래 카메라는 개인의 동의 없이 몰래 기록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고, 음란사이트나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삭제나 유포 금지를 신청하기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5/19)

• 사이버 성폭력 - 사례 3

- “얼마 전 제 미니홈피에 남겨진 방명록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방명록을 폐쇄시켰습니다. 글을 남긴 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이는 ○○○로 되어 있었고, ‘창녀 ○○야. 너 그렇게 걸레처럼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라는 저질스럽고 성적인 모욕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나 제 남자 친구가 그 방명록을 보았을까 봐 너무나 불안하고 수치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IP 주소는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은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신청인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언어폭력이 성희롱적인 언어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미니홈피의 방명록에 성적인 모욕의 글을 남긴 것은 신청인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니홈피 방명록과 같이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 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피해자의 미니홈피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IP 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 측에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의 글을 올린 화면을 빠짐없이 화면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둔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접수건수 폭주로 인해 경찰의 사건접수가 늦어질 수도 있다. 또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사례를 보면, 수원 지방법원에서 전 직장 동료 인터넷 미니홈피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 28살 강 모 씨와 싸우고 회사를 그만둔 뒤, “바람을 피워 임신했으니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글을 강 씨가 쓴 것처럼 남기는 등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6/19)

- 사이버 음란

-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되거나 유포되고 있는 성인 음란물을 말한다. 사이버 음란물은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에 노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음란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불법적으로 광고 혹은 노출되는 사이버 음란물은 일종의 사이버 폭력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7/19)

• 사이버 음란 - 사례 1

- 청소년에게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뜨는 팝업 창은 사이버 폭력!!
- 중학생인 K 군이 음란물을 처음 본 것은 약 4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이다. K 군은 인터넷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던 도중, 갑자기 수많은 팝업 창으로 음란사이트가 열리게 된 것이다. K 군은 당황하여 팝업 창들을 하나씩 닫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더욱 많은 음란사이트에 대한 팝업 창이 열리기만 하였다. 열린 팝업 창에서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포르노그래피와 선정적인 포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순간 K 군은 자극적인 사진들에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잠시 후 K 군은 팝업 창에 열린 음란사이트에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메뉴들을 클릭해 보게 되었다. 이후로 K 군은 음란사이트 몇 개를 저장해 두고 몰래 접속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비슷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 성적인 수치심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성인음란물은 청소년인 K 군에게 나쁜 성관념을 심어 주기도 하고 나아가 성범죄로 확대되기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성인이라면 이러한 성인음란물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음란물을 보거나 무시해 버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지만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는 이러한 성인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인음란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성인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올바른 윤리 교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8/19)

• 사이버 음란 – 사례 2

- “저는 두 아이를 둔 주부로서, 평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아이들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두 아이의 학교의 자유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호기심을 자극하여 클릭을 해보았더니,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저질성 포르노 화상들이 가득한 광고 글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게시판에 어떻게 이런 음란 광고 글이 버젓하게 있을 수 있는지에 화가 났고, 두 아이들이 이러한 글을 볼까 봐 걱정이 됩니다.”
- 사이버 공간상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은 보는 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동 조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음란성 광고 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공개게시판의 경우에는 온갖 포르노그래피가 가득한 음란 광고성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건전한 게시판 문화가 흐려지기도 한다. 위의 사례처럼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성 글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때로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일종의 사이버권리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음란 광고 글은 보는 사람에게 짜증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19/19)

- 사이버 테러

- 컴퓨터 통신망상에 구축되는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
- 주요수법
 - 집중적 전자 우편(e-mail), 전자 우편 폭탄
 -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전자 편지 폭탄
 - 특정 기관의 통상적 컴퓨터 프로그램에 중대한 과오를 발생시키는 루틴이나 부호를 무단으로 삽입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변조하여 예상치 못한 파국적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부정행위를 실행시키는 논리 폭탄 (logic bomb) 등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1/6)

-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 사용하지 않음
 - 도메인에 타인의 명이나 닉네임을 도용하지 않음
 - 바른 언어를 사용
 - 장난이 타인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
 - 논쟁이 발생할 경우 절제할 줄 알아야 함
 - 현실 생활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함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2/6)

-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중성 ID를 사용하자.
 -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자.
 -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변하지 말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
 - 온라인 대화시 상대방을 주의하자.
 - 온라인에서의 만남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데 주의하자.
 - 상대방의 성적유혹에 반응하지 말자.
 -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3/6)

- PC방 이용시 주의 사항
 - 음란물을 검색하지 않는다.
 -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한다.
 -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복사하지 않는다.
 -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 입력시 자동 완성 기능은 쓰지 않는다.
 -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4/6)

- 전자우편 이용시 주의 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운다.
 - 피싱 등 사기성 이메일을 주의한다.
 -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한다.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5/6)

- 대화방 이용시 주의 사항
 -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 아이디는 성별이나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 전화번호, 학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 음란 대화방은 참여하지 않는다.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리고, 친구와 함께 만나거나, 만나는 장소는 자신이 아는 곳으로 정한다.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6/6)

-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관리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한다.
 -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한다.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 패치에도 신경 쓴다.
 - 의심되는 파일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
 -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한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18)

- 관련 법률 (1/9)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 해설

- 비방할 목적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공연성

- 위법성 조각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2/18)

- 관련 법률 (2/9)

- 사이버 모욕

- 형법 상 모욕죄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고죄에 해당

- 해설

- 일반적으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 공간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3/18)

- 관련 법률 (3/9)

-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 해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4/18)

- 관련 법률 (4/9)
 - 사이버 성폭력 (1/3)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5/18)

- 관련 법률 (5/9)

- 사이버 성폭력 (2/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②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6/18)

- 관련 법률 (6/9)
 - 사이버 성폭력 (3/3)
 - 해설
 - 음란한 사진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만약 합성된 음란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시켰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호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7/18)

- 관련 법률 (7/9)
 - 사이버 음란 (1/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2
 -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8/18)

- 관련 법률 (8/9)
 - 사이버 음란 (2/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3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9/18)

- 관련 법률 (9/9)

- 사이버 음란 (3/3)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 음란물 배포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 » 배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을 예견하고 특정인에게 교부한 때에도 배포에 해당한다. 판매란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임대란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전시란 다수인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다수인인 한 특정·불특정을 가리지 않는 면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연성과는 다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 »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0/18)

- 대응 방법 (1/9)

-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사이버 공간상에서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흥분해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다. 2차적인 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 가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폭력을 원치 않음을 밝힌다. 이상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1/18)

- 대응 방법 (2/9)

- 피해사실에 대해 공개 자료를 수집하기

- 사이버폭력 행위가 증명될 수 있는 다 수의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 등을 화면 캡처하여 저장해 두며 발생경위를 기록해둔다. 상담 및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 꼭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그러나 증거자료는 편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1/3)

-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론지원, 법률지원, 재활치료지원 등 다양한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응방법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청소년유해 정보신고센터로 증거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2/18)

- 대응 방법 (3/9)
 -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2/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유 무선 인터넷,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PC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심의위원회	근거 조항과 심의 내용
제1분과 전문위원회	각종 법률상 금지행위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자살, 살인청부, 폭탄제조, 불법 다단계판매, 도박, 폭력조장, 언어폭력, 잔혹·혐오, 한국 오류정보, 사회질서위반 등의 정보
제2분과 전문위원회	성 관련 음란 및 선정적 문자·음성·음향·영상·화상·부호, 아동 포르노, 청소년 성매매, 매매춘, 음란정보 판매·구매·교환, 청소년유해 정보 표시방법 위반 등의 정보
제3분과 전문위원회	모바일,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게임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음란성·폭력성·사행성 관련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제4분과 전문위원회	위성통신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음란성·폭력성 관련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3/18)

- 대응 방법 (4/9)

-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3/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심의대상 인지	위원회 상정	심의	결과통보	회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자 등 • 심의신청 • 인터넷119신고 • 기타 위원회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위원회 • 전문위원회 (4개분과) • 상임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적합부적합 - 시정요구 결정 - 청소년유해정보 • 결정 및 결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회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안전심의 ✓ 분기별 개최 -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심의 ✓ 월 1회 개최 - 상임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효율적인 심의 ✓ 심의기준 적용이 명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해당 정보의 삭제 - 이용 정지 - 이용 해지 • 사업자 자율결정 • 청소년유해정보 확인 • 등급 구분 • 자문의견 제시 • 기타 필요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통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통신사업자 - 정보제공자 등 - 일반 이용자 - 기타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4/18)

- 대응 방법 (5/9)

-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기

-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게시물이 게시되고 나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게시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이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한다. 해당 사업자의 자체적인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해당 ID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하기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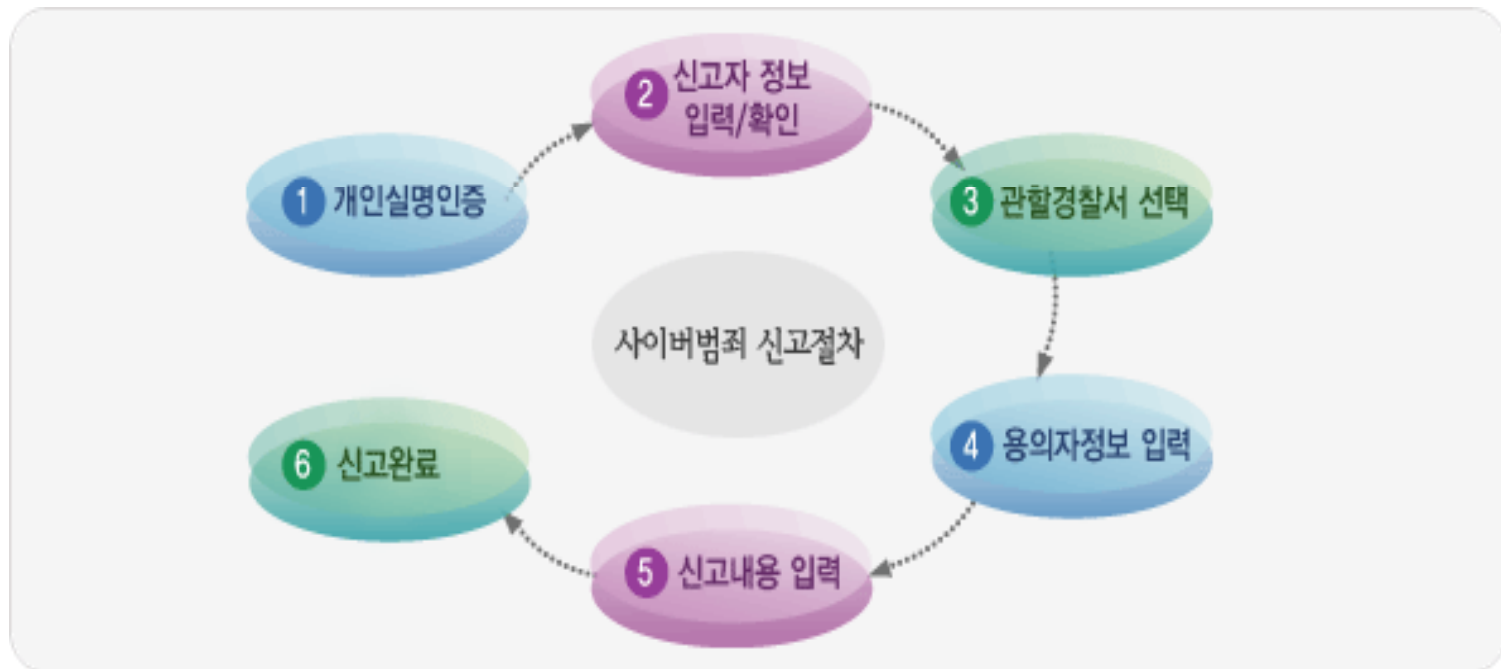
- 접촉 기록을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자에게 알리거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상대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하려면 경찰수사가 필요하다. 해당 증거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www.netan.go.kr, 전화: 1566-0112)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수사여부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에서 결정한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5/18)

- 대응 방법 (6/9)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하기 (2/3)
 - 신고하기
 - 사이버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함
 - 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 ② 사이버 테러 대응 기관에 도움을 요청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③ 사이버 테러 대응 기관의 연락을 통해 신고 사실을 확인
 - » 신고 절차가 끝나면 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연락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신고 절차 종료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6/18)

- 대응 방법 (7/9)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하기 (3/3)
 - 신고절차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7/18)

- 대응 방법 (8/9)

- 해당 범죄에 대한 가해자를 형사고발 하기

-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관련법규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1/2)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사 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18/18)

- 대응 방법 (9/9)
 -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2/2)
 - 손해배상
 - 신고를 통해 수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
 - 가해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 있음
 - » 형사법에 저촉이 된 경우 가해자는 전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거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위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 된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변화 (1/4)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피해자 등 고소할 권한을 가진 사람(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 결혼목적 약취·유인 강간과 추행 (강간상해·치상·치사·살해 제외) 모욕 사이버 모욕	협박 폭행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변화 (2/4)

- “최진실 법”

-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속칭
- 2008년 10월 최진실 씨의 죽음을 기화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피력
- 최진실 씨의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
-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2005년 5월 참여정부 시절 경희대 법대 정완 교수)
 - 시안: 제60조 제2항(사이버모욕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변화 (3/4)

- 사례

-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하루 이용자 30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09년 4월 1일 발효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 1심은 무죄
-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건국대 주경복 교수의 7년 동안의 개인 메일 압수 사건
- 구글 유튜브 실명제 거부 사건; 개정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즈음하여 게시판 업로드 기능 제한
- 2009년 4월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불법 파일 교환에 대한 이용자 처벌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연대 책임
 - 유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시도하던 프랑스는 무산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변화 (4/4)

- 관련 뉴스와 컬럼
 - "구글, 모든 서비스에 실명제 적용 안 할 것"
 - "구글코리아 대표 'G메일 사용자 정보요청 거부할 것'"
 - "구글코리아 사장 '유튜브 실명제 별 실효없어'"
 - "비극적 인터넷... 사라지는 꿈"
 - "주민증 검사하는 갈대밭에서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을까"
 - "몸은 한국에 두고 머리와 가슴은 '망명'"(사이버 공간의 네티즌 망명)
 - 1996년 인터넷 가상국가 라도니아
 - 1999년 북해의 시랜드에서 인터넷 사업
 - 2008년 세계 아고라 정의 포럼
 - 2009년 (가칭)대한민국 네티즌 망명지
 - "구글코리아, 한국 법 존중해서 문제 될 게 없다"
 - "저작권, 이제 시민 기본권으로 재정의하자"

잠깐, 모두가 다 아는 좋은 詩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잠깐, 모두가 다 아는 좋은 詩 하나 더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의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